

폐교, 지역 활력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10.31.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각 시·도 및 교육청과 함께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마다 폐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두 부처는 이번 협약과 함께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노후화된 건물, 매입 및 정비비 부담, 현행 규제 등으로 인해 폐교 활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교를 지역의 문화·복지·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돌봄·의료 연계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폐교의 상태, 위치, 도면, 가격, 활용사례 등을 공개하는 ‘폐교시설정보 안내 서비스’도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 폐교 활용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한다. 더불어 현행 「폐교활용법」이 규정한 여섯 가지 활용 용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학돌봄시설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로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되고 있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인포그래픽**
출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2025.10.31).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보도자료].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국토계획법」 제97조),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법」 제16조) 등 법정 절차에는 통상 6개월~1년 소요